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18
----------	-------

발의연월일 : 2026. 8. 18.

발 의 자 : 구자근 · 안철수 · 최수진
박준태 · 이인선 · 김선교
이만희 · 김승수 · 김도읍
유상범 · 강대식 · 최은석
강명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내국법인이 자사 소속 근로자 및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건근로자에게 식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지출액이 손금에 산입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분류되어 손금 산입 한도의 제한을 받고 있어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내국법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
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104조의15를”을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37을”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7(도급·용역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의 구체적인 범위, 복리후생비의 범위 및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122조의4제1항”을 “제104조의37, 제122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122조의4제1항”을 “제104조의37, 제122조의4

제1항”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122조의4제1항”을 “제104조의37, 제122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2조의4제1항”을 “제104조의37, 제122조의4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급·용역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3, 제28조의5,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29조의8제4항·제5항,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9조의9,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⑥ (생략)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37을-----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
(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04조의37(도급·용역 등 근로
자의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액
공제) ① 내국법인이 2030년 1
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식비 등 복리
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
의 구체적인 범위, 복리후생비
의 범위 및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① -----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typical of primary-ruled notebook paper.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1. · 2. (현행과 같음)

[illegible]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u>제122조의4제1항</u>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 ----- ----- ----- <u>제104조의37, 제122조의4제1항</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u>제122조의4제1항</u> ,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하는	① ----- ----- ----- ----- ----- ----- ----- ----- ----- ----- ----- ----- <u>제104조의37, 제122조의4제1항</u> ----- ----- ----- -----

This image shows a vertical rectangular sheet of white paper designed for handwriting practice. It features ten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evenly spaced from top to bottom. Each set consists of a single dashed lin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The margins are consistent on all sides, and there are no other markings or text on the page.

②

